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637호 2025. 8. 6.(수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○통행의 금지·제한 공고(신도시 주차타워 조성)(예천군 공고 제2025-1119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(전화 650-6071)

예천군 공고 제2025-1119호

[☒] 통행의
금지·제한
[☐] 차량의 운행 제한] **공고**

「도로법」 제76조제1항·제2항, 제77조제1항·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,
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[☒] 통행의
금지·제한
[☐] 차량의 운행 제한 을 공고
합니다.

2025년 8월 6일

예 천 군 수



도로의 종류	도시계획도로	노선명	종로 2-9호
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	차량 및 통행자	구간	종로 2-9호(일부) [걷고싶은거리 ~ 종로1-7호]
기간	2025년 8월 7일부터 ~ 2026년 5월 7일까지		

이유

-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 건축공사의 원활한 작업추진 및 안전사고 예방

그 밖의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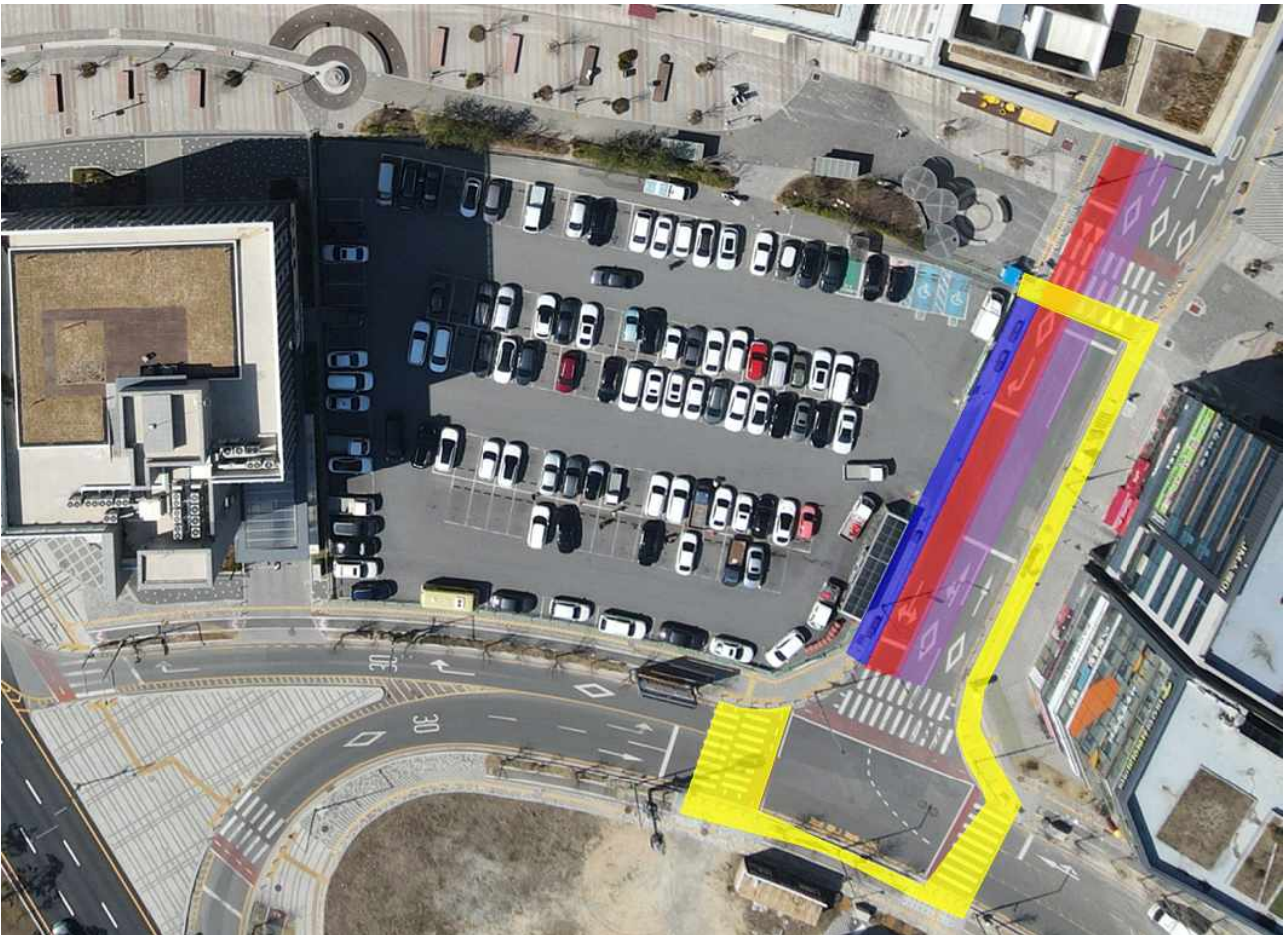
- 공사구간 통행제한 및 우회도로 결정(붙임 참조)

첨부서류: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

붙임

통행의 제한 및 우회노선 지정

1. 제한도로 : 도시계획도로(중로2-9)
2. 제한구간 : 중로2-9(일부)[건고싶은거리 ~ 중로1-7호]
3. 제한대상 : 차량 및 보행자
4. 제한기간 : 2025년 8월 7일부터 ~ 2026년 5월 7일까지
5. 제한이유 :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의 원활한 작업추진 및 안전사고 예방
6. 통제방법 : 공사 추진중 도로를 통제해야할 경우 신호수를 배치하여 통행 금지 및 제한
7. 우회노선도



	제차량 구간		제차량 우회도로
	제통행자 구간		제통행자 우회보도

8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건축과(☎054-650-697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